KOSHA GUIDE

C - 27 - 2011

- (1) 근로자의 통행이 빈번한 출입구 및 임시출입구 상부에는 방호선반을 반드 시 설치하여야 한다.
- (2) 방호선반의 내민 길이는 구조체의 최외측으로부터 산출하여야 한다.
- (3) 방호선반의 설치 높이는 출입구 지붕높이로 지붕면과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.
- (4) 방호선반의 받침기둥은 비계용 강관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.
- (5) 방호선반의 최외곽 받침기둥에는 방호울 또는 안전방망 등을 설치하여 방호선 반 외측으로 낙하한 낙하물이 구조물 내부로 튀어 들어오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.

7.4 인화공용 리프트 주변 방호선반

- (1) 리프트와 방호선반의 틈간격은 4cm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.
- (2) 방호선반의 내민길이 산정의 기준점은 리프트 케이지 최외곽으로 한다.
- (3) 방호선반의 설치 높이는 리프트 지붕 높이로 리프트 지붕면과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.
- (4) 방호선반의 받침기둥은 비계용 강관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.
- (5) 방호선반의 최외곽 받침기둥에는 방호울 또는 안전방망 등을 설치하여 방호선반 외측으로 낙하한 낙하물이 구조물 내부로 튀어 들어오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.

7.5 가설통로 상부 방호선반

(1) 바닥판의 폭은 가설통로 난간의 중심선에서 최소 200mm 이상 돌출시켜 설 치하여야 한다.